분석과 진단

한미 통상 마찰의 새로운 해법 모색

김연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통상 마찰 문제를 다자간 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전략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對美 통상 문제를 WTO에 상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이는 그동안 미국에 관한 한 수세일변도였던 통상 정책을 적극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마찰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WTO 제소가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WTO 제소는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새로운 해법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머리말

일반적으로 통상 협상에 있어서 무역 적자국은 무역 흑자국에 대해 협상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쪽의 무역 적자 증가는 상호주의와 개방주의의 일반 원칙 아래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 통상 문제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미 통상 마찰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였다. 이때문에 한국은 국내 시장 개방 압력과 한국 제품의 미국내 수입 제한 조치 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對美 무역 적자가 급증(1996년 116억 달러, 1997년 100억 달러 초과 예상)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수출 증대가 고용 확대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미국의 최근 통상 정책 기

조가 공세적 통상 정책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품목·사안별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對美 수출품에 대한 각종 수입 제한 조치들도 보호주의 정책 수단을 넘어 보복 조치의 기능을 통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볼 때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 사안별로 각종 분쟁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같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통상 마찰 문제를 다자간 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전략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對美 통상 문제를 WTO에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이는 그동안 미국에 관한 한 수세 일변도였던 통상 정책을 적극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마찰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WTO 제소가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WTO 제소는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새로운 해법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최근 미국의 對韓 통상 정책의 기조 속에서 반덤핑 규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WTO체제 하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가 갖는 의미와 본건의 내용과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對韓 통상 정책의 기조와 반덤핑 규제

전통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했던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은 관세, 쿼터, 수출 자율 규제 등이었다. 그러나 관세는 전후 케네디라운드를 포함한 여섯 차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내 시장 보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점차 상실하게 되고 쿼터와 수출 자율 규제 등 수량 제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가격 제한 정책으로서 등장한 반덤핑관세제도는 수량 제한 정책과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니고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되어왔다.[1] 수량 제한 정책은 일정 기간을 두고 얼마만큼의 수입 수량이 제한된다는 약속이므로, 최소

한 특정 기간 동안에는 가변적이지 않아 수출국에게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반면, 반덤핑 관세는 언제고 발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수출 당사자들을 지극히 불안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수출국에 대한 피해에 있어서도 반덤핑 관세는 여타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비해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수출 업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수입 제한 정책으로 여겨져왔다.

얼핏보기에 순수히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덤핑관세 제도가 특히 우리에게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제도의 상기와 같은 폐해 이외에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은 무역 상대국이 이를 수용치 않는 경우 보복이 가해진다는 메시지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보복은 주로 대상국의 자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형태를 띠게 되므로, 이 경우 원래는 국내 시장의 방어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도 실제로는 유효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된다. 반덤핑 관세는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이 제도가 단순히 국내 시장의 보호만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일국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다.

1993년에 출범하여 현재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있어서 반덤핑 관세를 통한 가격 규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 무역(fair trade)' 추구라는 80년대 공화당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 한 가지 구별되는 점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미국 경제의 활력 회복에 두고 수출 증대가 고용 확대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공세적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 이를 위해 모든 협상 채널과 수단을 동원하여

1) 그동안 반덤핑관세제도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독점 권한처럼 행사되어왔으나, 최근 개도국 사이에서도 반덤핑 관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논리와 행정 능력으로 무장되어 이 제도를 선진국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2) 클린턴 행정부의 공세적 통상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 예로서, 1993년 국가 수출 전략의 수립,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농산물, 통신, 항공, 자동차,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장 개방 압력, 결과 지향적 협상 전략, 양자 통상협정의 이행 감시 기구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해외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 관행 및 무역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사와 판정, 제재 조치의 발동 등 자국의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수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방어적 무역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반덤핑 관세 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총 19 건에 달하는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 가운데 반덤핑 규제가 14 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산 컬러 TV와 DRAM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서 보듯이, 산업 피해의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소멸된 상황에서도 반덤핑 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차세대 전자제품군에 대한 수입 규제의 발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WTO체제 하에서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TO체제에서 용인되고 있는 수입 규제 수단은 관세, 세이프가드 그리고 반덤핑 조치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관세는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제한 수단으로는 기능하기가 어려우며, 세이프가드는 불공정한 수입 거래에 대한 일시적인 산업 피해 구제 수단으로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반덤핑 조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70년대 초반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는 섬유류의 쿼터제와 같은 수량 제한이나 GATT 제19조에 의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덤핑, 상계관세, 337조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이들 수입 규제 조치들은 주로 섬유, 신발, 철강 등 미국의 사양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것이었다. 한편, 80년대 이후에는 컬러 TV, 반도체, 철강 제품 등 주로 전자 및 중화학공업 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수입 규제가

3) 물론, WTO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의 발동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고, 반덤핑 관행위원회에서 각국의 반덤핑 관련 법안들의 WTO협정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음. 그러나 실제 반덤핑 조치의 발동 건수는 1995년부터 1996년 6월까지 총 214 건으로, 1990~94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245 건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미국은 55 건을 차지한 EU에 이어 42 건으로 2위를 기록했음.

실시돼오고 있다. 매년 적게는 11 건에서 많게는 19 건에 달했던 이들 수입 규제 가운데서 반덤핑 관세를 통한 가격 규제는 70~80%를 차지해왔다.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에 있어 반덤핑 관세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것이다. 그 결과, 對美 수출액 대비 수입 규제 품목의 수출액 비중은 1985년 36.9%에서 1993년 15.5%까지 하락하였다. 수입 규제에 따라 해당 품목의 對美 수출이 그만큼 위축되었던 것이다. 同비중은 최근 몇년 동안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기는 했으나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4]

반덤핑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WTO 분쟁 해결 기구

지금까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 조치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왔다. 우리 업계와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종 상품 및 산업 피해 판정, 덤핑 마진의 산정 등에 관한 이의 제기 · 철회 신청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짜놓은 규제의 틀 안에서 미국 행정 기관들의 자의적인 판정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규제 남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획득해내는 것이 긴요하다.

기존 GATT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패널의 설치를 이해당사자 어느 한쪽이 거부할 수 있었고, 패널의 보고서도 구속력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해소 단계별 소요 기간의 명확한 설정, 패널의 자동적 설치, 패널과 상소 기구 보고서의 자동적인 채택, 상설 상소 기구의 설치 등 국제 통상 마찰의 심판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속성, 실효성, 강제성 등을 갖추고 있다. 실제 분쟁 건수에 있어서도 GATT 47 년 동안 200여 건이 제기된 데 반해,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 건이 분쟁 해결 절차에

4) 한국무역협회, 「주요 선진국의 수입 규제 현황」, 각년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과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주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해왔으나, WTO 출범 이후로는 분쟁 해결 기구에 회부된 사안 가운데 1/3 이상이 개도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동안 미국, EU, 캐나다 등으로부터 8 건의 제소가 있었지만, 반대로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분쟁 해결 기구에 회부하여 다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대응 양식이 지나치게 양자간 해결에만 집착하고 국제 규범의 틀 속에서 다자간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컬러 TV · DRAM 반덤핑 조치, 캐나다의 油井用 강관 반덤핑 조치 등 3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WTO에 제소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컬러 TV 반덤핑 규제에 대한 WTO 제소의 내용과 전망

미국은 그동안 반덤핑 규제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를 지속해왔다. WTO 반덤핑협정의 제11조 1항 및 2항은 반덤핑 관세가 덤핑 상쇄에 필요한 기간과 정도 내에서만 부과되도록 제한하고, 정당한 철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자의 철회 신청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86~91년의 6 년간 微小 판정을 받아왔고 1991년 이후 직수출도 중단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1984년 이래 13년간이나 지속되어온 반덤핑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에서 생산된 한국 컬러 TV에 대해 우회 덤핑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재심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를 우회 덤핑 조사와 연계시켜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으며 절차 상의 하자(신청 기한의 경과)를 이유로 철회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회 덤핑 조사는 반덤핑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이며, 재심 연기는 반덤핑 규제의 부과 필요성이 소멸될 경우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하는 협

정 상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철회 신청 기한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해서도 수출자의 재심 청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WTO반덤핑협정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현재 덤핑 혐의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래 유망 사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앞으로 개발될 HD(고선명) TV나 PDP(플라스마 액정 패널) TV에 대한 규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외국산 가전 제품 수입에 대한 전기 · 전자 관련 노동조합의 반발을 고려하여 쉽게 반덤핑 규제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

WTO 분쟁 해결의 절차상 제소가 있을 경우 패널 설치에 앞서 최소한 60 일간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 진행된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 이해 관계가 없는 3인의 전문가로 패널이 구성된다. 본 건의 경우 지난 8월 7일에 제1차 한미간 당사자 협의가 있었다. 同회의에서는 우회 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멕시코, 태국 등 관계국도 제3자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의 우회 덤핑 조사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재심과 우회 덤핑 조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한국이 좀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당자국들의 입장 표명과 사실 확인으로 1차 협의는 종결되었다. WTO에 회부된 분쟁의 1/4 가량이 당사자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기대를 걸어볼 만하나, 한미 당사자 협의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현재 아무런 덤핑 협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개연성' 만으로는 덤핑 규제에 대한 패널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우회 덤핑 시비는 미국 스스로 주도해온 NAFTA의 기조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멕시코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은 미

소 마진, 철회 심사, 우회 덤핑 조사 등 미국 반덤핑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WTO 판정에 각국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회 덤핑 조사에 대한 판정은 현재 진행 중인 우회 덤핑 규범 제정과 관련한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승소를 장담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먼저 특정 회원국의 반덤핑 규제 문제가 GATT 및 WTO 패널에 회부된 유사 선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건의 결과가 앞으로 반덤핑 관련 분쟁의 핵심 판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패널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협의 요청에서 최종 판정까지는 평균 약 15 개월이 소요되고 최종 판정 후에도 당사국의 상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 덤핑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철회 신청시 향후 덤핑이 재발될 경우 즉시 원래의 조치로 복귀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으므로 미국이 덤핑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철회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대미 직수출 중단이 대미 수출 포기 목적이 아니라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을 의도한 것이라면, 우회 덤핑 조사에 관한 비난과 덤핑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우리측의 논리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WTO 패널에서 미국의 WTO 규정 위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권고 가능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GATT 패널은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의 취소, 반덤핑 관세의 상환, 기타 패널의 판단 사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협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각국의 법령 개정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면을 보여왔다. WTO 패널에서는 재심 신청 기간의 제한이나 우회 덤핑 방지에 관한 미국의 관세법 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선례에 비추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장 가능성이 큰 조치는 재심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미국에서 재심 및 철회 검토에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실적으로 덤핑 부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반덤핑 관세의 재심 및 철회보다는 우회 덤핑 조사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회 덤핑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미국의 우회 덤

핑 방지 규정 및 조사 관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일지 모른다. 우회 덤핑 규제는 적법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 반덤핑 관세 재심 및 철회는 그 자체보다는 우회 덤핑 규제를 방어하는 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주요국들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고 관련 규범 제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정을 받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향후 과제

미국의 반덤핑 규제는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절차 규정과 행정 기관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남용 사례가 많았고, 이때문에 우리의 대미 수출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이 펼치는 논리의 전개가 분쟁 판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GATT 패널 절차에서는 법적 쟁송과 정치적 교섭이 공존했던 반면, WTO 패널 절차에서는 법적 논리의 공방에만 거의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일단 분쟁이 패널 절차에 회부되면 결국 법적인 논리 개발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상 및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 부처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우리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컬러 TV 사례에 있어서는 우회 덤핑 조사에 관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멕시코가 NAFTA 또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를 제소할 경우 전략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 기업과 이해를 같이하는 미국 기업의 로비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산 제품을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가 그들의 중요 수입품에 부과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이들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역로비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수출 기업과 이해를 같이하는 미국 기업들의 로비력은 여느

외국 기업 혹은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전략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상당한 논리적 혹은 실제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패널 구성 이전에 당사자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WTO체제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WTO체제가 불완전하게 운영되는 상당 기간 동안 회원국간 분쟁은 끊임없이 분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WTO는 회원국간 분쟁의 장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무역체제를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 이래로 그동안 우리는 국내 제도의 조정 문제에 전념해왔기 때문에 다자간 기구에서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을 전개해가는 데는 관심도 적었고 대응력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WTO 제소 사건이 국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HRI

참고 문헌

김기수 편(1996), 「미국 통상 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1995), 「WTO 반덤핑 관세」, 세종연구소.

김도훈 외(1996),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이두형(1997. 6), "한국산 컬러 TV 관련 한미간 반덤핑 분쟁 사례 연구", 「통상법률」, vol.15.

한국무역협회, 「주요 선진국의 수입 규제 현황」, 각년판.